

대전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20가단1110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빛

담당변호사 권민지, 이지은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 황건수

변론 종결 2020. 10. 15.

판결 선고 2020. 10. 2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전 중구 D 대 3,4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9.6/3,421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 : 피고는 C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 등 총 4필지 지상에 'F'이라는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2006. 3. 31.경 피고(피고의 상호는 당초 주식회사 G이었다가 2010. 3. 25. 주식회사 H으로 변경되었고, 2013. 12. 5.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일자불상경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E는 2008. 2. 20.경 C에 이 사건 상가 신축사업을 양도하였고, C은 피고에게 2008. 3. 21. 신탁(이하 '이 사건 신탁'이라 한다)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남대전등기소 2008. 3. 21. 접수 제1567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7. 10. 15.경 E로부터 공사대금의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상가 중 1호 및 2호를 분양받기로 하고, E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E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이 해지되었으면, 피고로서는 E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C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다시 C으로부터 이 사건 이전등기를 경로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신탁이 설정된 것이므로 신탁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사해신탁에 해당한다. 피고는 C에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1)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사해행위취소권 및 원상회복청구권행사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 2) 신탁법 제8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의 일종이라 할 것인데, 그 행사에 있어서 민법의 규정과 달리 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51009 판결 참조),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3)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인 이 사건 신탁계약은 2008. 3. 21. 체결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0. 4. 1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부가적 판단)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유 없다.

- ① 원고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원상회복만 청구하였다. 그런데, 사해행위가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원상회복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② 특정물채권(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196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보전채권이 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③ 원고가 피보전채권이라고 주장하는 분양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분양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7. 10. 15.경 E로부터 공사대금의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상가 중 I 호 및 J호를 분양받기로 하고, E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E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시행권을 양수하면서 위 분양계약에 따른 의무도 양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와 E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I 호 및 J호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준